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균

국 무 위 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대통령령 제31079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통령령 제30850호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제16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4항·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전단 중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계좌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계좌적합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는 경우 계좌적합훈련과정의 운영 현황, 훈련성과 등에 관한 정보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 또는 상담 등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진단 및 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술교육대학”을 “기술교육대학(이하 “기술교육대학”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의 보수교육(이하 “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 1.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 2.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 3. 훈련생에 대한 지도 및 상담
 - 4. 훈련성과 및 훈련생에 대한 평가
 - 5.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보수교육 실시 결과를 법 제7조의2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에 대한 심사 등 성과관리를 위한 업무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방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7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를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37조제2항”을 “법 제3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37조”를 “법 제37조제3항”으로 한다.

제39조의3제1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대학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학년도의 전 학년도에 같은 계열의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해당 학력을 인정받기 위한 학교나 과정을 졸업한 후 관련 분야의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사항 및 대상) ① 법 제5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2. 법인등록번호(해당 기관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 ②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공표 기준일”이란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2월 31일을 말한다.
- ③ 법 제56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천만원을 말한다.

제50조의3(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 절차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 내용 등을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공표 여부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공표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결정·통보를 한 후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표 사항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홈페이지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1년 동안 게시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기술교육대학의 홈페이지 또는 그 밖에 열람이 가능한 공공장소에 1년 동안 게시할 수 있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기술교육대학에 위탁한다.
 - 1. 법 제5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은 법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평가
 - 2. 법 제56조의2제1항 및 이 영 제50조의2에 따른 공표 사항 및 대상에 관한 확인 및 제50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표 대상자에 대한 통보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60조에 따라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기술교육대학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제52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를 각각 제12호 및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에 따라 설립된 기술교육대학”을 “기술교육대학”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여부 확인”을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로 한다.

- 11.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

부 칙

이 영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부정수급 또는 위탁계약 해지 등이 있는 경우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이 개정(법률 제17186호, 2020. 3. 31. 공포, 10. 1. 시행)됨에 따라 보수교육 내용·시간 등에 관한 사항 및 공표 대상·절차·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의 실시(제28조의2 신설)
 -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이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훈련직종에 관한 전문지식 및 기술, 훈련과정에 대한 교수 기법 등으로 함.
 -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은 매년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고, 그 보수교육의 시간은 24시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함.
- 나.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완화(제39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신설)

종전에는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그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관련 산업체에서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어 졸업 등과 동시에 관련 산업체에 근무하지 않으면 다음 학년도의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관련 산업체에서 9개월 이상 근무하면 학위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게 입학자격을 완화함.

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해지 등의 공표(제50조의2 및 제50조의3 신설)

- 1)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인정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기관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외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및 법인등록번호를 공표하도록 함.
- 2)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관련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인정이 취소된 자로서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을 부정수급한 자를 공표 대상으로 함.
- 3) 고용노동부장관은 공표 대상자에게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치기 전에 미리 공표 내용 등을 통보하고, 그 통보를 할 때 공표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주어 공표와 관련된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20년 9월 29일

국 무 총 리 정 세 군

국 무 위 원

추 미 애

법무부장관

국 무 위 원

김 현 미

**국토교통부
장 관**

●대통령령 제31080호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제5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호(중전의 제5호) 중 “제4호까지”를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5. 법 제6조의3제1항제8호의 사유로 계약의 갱신이 거절된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이었던 자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를 “제5조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로,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않았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중에 존속하는 임대차계약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인적사항”을 “인적사항(제5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법인명 또는 단체명으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을 “제5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거나”로 한다.